

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일
신청구분	[]건축주	[]설계자	[]공사감리자	[]공사시공자
허가(신고)번호				
대지위치				

① 건축주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성명(법인명)	(전화번호:)	(전화번호:)
생년월일(사업자·법인등록번호)		
주소		

② 설계자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성명(법인명)	(자격번호:) (협회 회원번호:)	(자격번호:) (협회 회원번호:)
사무소 명	(신고번호:)	(신고번호:)
주소	(전화번호:)	(전화번호:)
설계기간	~	~
최초 도급금액	원	도급계약일자
정산금액	원	남은 계약금액 원

③ 공사감리자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성명	(자격번호:)	(자격번호:)
사무소명	(신고번호:)	(신고번호:)
주소	(전화번호:)	(전화번호:)
감리기간	~	~
최초 도급금액	원	도급계약일자
정산금액	원	남은 계약금액 원

④ 공사시공자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대표자명		
회사명	(면허번호:)	(면허번호:)
주소	(전화번호:)	(전화번호:)
시공기간	~	~
최초 도급금액	원	도급계약일자
정산금액	원	남은 계약금액 원

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안내			
첨부서류	•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수수료 원
제출하는 곳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처리부서	건축허가(신고) 부서

근거법규	
「건축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	1.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. 2. 건축주는 설계자,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유의사항	
「건축법」 제111조 제1호	• 건축주·설계자·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.

작성방법	
1. ① ~ ④ :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“○○○ 외 ○인”으로 적으며, “외 ○인”의 현황도 제출합니다. 2. 설계자,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,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, 도급계약일자,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.	

처리절차	
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필증 작성 →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(건축허가·신고 부서) 신고인	